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법 제249의13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
2.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자 및 이를 수행하는 기구(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의한 자는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 또는 발행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9.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10.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1.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

는 경우

13.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4.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15. 주식배당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6. 상속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양도(해당 거래에 동반하거나 후속되는 특정증권등의 양수·양도를 포함한다)
 18. 담보제공한 특정증권등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19. 회사의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특정증권등을 취득,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20.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정증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21.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③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고자(특정증권등의 거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에 관한 사항)

2. 거래대상 특정증권 등의 종류, 종목 및 수량

3. 거래목적

4. 예상거래가격

5. 거래기간(이 경우 거래기간의 종료일은 법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기간의 개시일 기준 30일이내여야 한다)

6. 그 밖에 거래계획 보고서(법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 보고서를 말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가 그 특정증권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고 그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73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⑦ 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사망(이 경우 법 제173조의3제5항에 따른 철회보고서 제출의무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파산관재인의 경우 같은 법 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3. 해당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4.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거래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거래계획, 철회사유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거래기간 중에 있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제출한 거래계획 보고서에 따른 거래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
2.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다만, 거

래기간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를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9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29조제5항제1호 및 법 제446조제3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⑦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1. 법 제429조제5항제2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법 제429조제5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법 제429조제5항제5호의 경우: 제173조의3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보고서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별표 18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7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0 제58호의4부터 제58호의7까지를 각각 제58호의7부터 제58호의10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58호의4부터 제5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의4. 법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계획에 대한 보고의 접수

58의5.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른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계획에 대한 철회내용 보고의 접수

58의6. 법 제173조의3 제5항에 따른 보고서(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른 철회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비치 및 공시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법 제249의13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u> <u>2.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u>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u> <u>4.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자 및 이를 수행하는 기구(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 <u>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u> <u>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u>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 또는 발행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9.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10.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1.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3.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4.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15. 주식배당에 따라 증권을 취
득하는 경우

16. 상속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
는 경우

17.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
정증권등의 양수·양도(해당
거래에 동반하거나 후속되는
특정증권등의 양수·양도를 포
함한다)

18. 담보제공한 특정증권등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
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
우

19. 회사의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
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특정증권등을 취득, 이
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20.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
가받은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정
증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21.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보고자(특정증권등의 거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2. 거래대상 특정증권 등의 종
류, 종목 및 수량

3. 거래목적

4. 예상거래가격

5. 거래기간(이 경우 거래기간
의 종료일은 법 제173조의3제
1항에 따른 거래기간의 개시
일 기준 30일이내여야 한다)

6. 그 밖에 거래계획 보고서(법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
계획 보고서를 말한다)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증권
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④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거래
특정증권등의 수가 그 특정증권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
고 그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73조의3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100분
의 30을 말한다.

⑦ 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사망(이 경우 법 제173조의3
제5항에 따른 철회보고서 제
출의무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파산관재인의 경우 같은 법

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3. 해당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4.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종가 대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거래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거래계획, 철회사유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 내에 증권선물 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거래기간 중에 있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제출한 거래계획 보고서에 따른 거래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

2.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다만, 거래기간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를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⑤ (생략)
<신설>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29조제5항제1호 및 법

<신 설>

제446조제3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⑦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1. 법 제429조제5항제2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법 제429조제5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

⑥ (생략)	<u>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u> <u>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u> <u>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u> 3. <u>법 제429조제5항제5호의 경</u> <u>우: 제173조의3제4항의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u> <u>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보</u> <u>고서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u> <u>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u> <u>은 경우에는 거래계획 보고일</u> <u>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u> <u>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u> <u>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u> <u>곱하여 산출한 금액</u>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